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2022.9.15목 - 18일

주최. 대구광역시 주관. EXCO



참가신청 및 계약서

*신청기한 2022.8.12(금)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E-mail	세금계산서 수신용
담당자명	부서(직위)	담당자 이메일
TEL	휴대폰	FAX
회사대표전화	Website	

필수입력사항

참관가이드	브랜드명	무료초청장	장
인쇄용	주요전시품목	※35자 이내, 취급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입	
간판명	국문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만 해당	영문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만 해당	
CS담당자	연락처	출입증명	출입증수량 ※최대5개 개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

구분	신청내역	단가	신청금액
조기신청 2022.7.15까지	독립부스	부스 (9㎡)	₩1,600,000원 /부스 원
	기본(조립)부스	부스 (9㎡)	₩1,900,000원 /부스 원
	프리미엄부스	부스 (18㎡)	₩4,500,000원 /부스 원
일반신청 2022.8.12까지	독립부스	부스 (9㎡)	₩1,700,000원 /부스 원
	기본(조립)부스	부스 (9㎡)	₩2,000,000원 /부스 원
	프리미엄부스	부스 (18㎡)	₩4,700,000원 /부스 원
전기	일반(220V)	KW	₩50,000원 /KW 원
	24시간(220V)	KW	₩60,000원 /KW 원
전화	국내	대	₩70,000원 /대 원
	국제	대	₩150,000원 /대 원
인터넷(LAN)	회선	₩100,000원 /회선	원
급/배수	개소	₩200,000원 /개소	원
간판밀봉	개	₩10,000원 /개	원
간판윳봉	개	₩10,000원 /개	원
HQI조명	개	₩40,000원 /개	원

참가비 납입

납부처 : 우리은행 2632-935-4318118	소계	원
예금주 : (주)엑스코 (회사명으로 송금 후 확인)	부가가치세(VAT)	원
	합계	원

- ※ 조기 신청 계약금은 참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조기 신청 할인 혜택은 소멸됩니다.
- ※ 전시회 참가 규정 중 '제4조 전시운영', '제6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을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행사 종료 후 행사 마지막일자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별도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 사무국 방문 시 참가비 카드 결제 가능 / 유선상 참가비 카드 결제 시 BC카드만 가능

년	월	일
대표자		(인)
담당자		(인)
반드시 인감 또는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조기 신청 2022년 7월 15일(금)까지
일반 신청 2022년 8월 12일(금)까지

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부스배정 기준

① 공식 후원사 ② 이벤트 참가사 ③ 부스규모(동일 부스 규모일 경우: ①계약금 납입순 ②참가신청) 등 전시품의 성격에 의거 순차적으로 배정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정

-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엑스코(EXCO)"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제34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비(VAT포함) 50%를 7일 이내 참가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 신청과 참가 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 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 기술 지원 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주최자는 부정행위 방법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전시회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행사의 채무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부스배정

주최자는 메인 후원사 부스와 이벤트 참여업체 부스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참가업체 배정은 ①부스규모 ②계약금 입금 순서 ③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운영

- 전시자는 제34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 참가함에 있어 전시회 규정, 질서유지, 공공의 안전의 의무를 준수한다.
- 전시자가 참가 규정에 어긋나는 식음료 등의 조리 및 판매행위(식품위생법 36조, 37조, 42조에 의거),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 중 특별이익 제공 및 보험 모집질서 위반 행위(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 4, 제46조에 의거), 카드 영업 및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하여 다른 부스 및 참관객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회 즉시 중지·철거·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의 허가 없이 부스 위치 변경, 협의되지 않은 공간(전시장 및 로비)에서의 상담 및 DB 수집 홍보물 배부, 현수막 등 기타 홍보물 설치, 참가업체 출입증 미소지자의 부스 내/외 영업이 적발될 시 즉시 철거하며 차기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 교환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전시기간 중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해 다수의 참관객 또는 전시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시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의 행사 참가를 제재할 수 있으며, 향후 행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전시자가 사용 중인 기기로 인하여 다른 전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기기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음이 85dB을 초과하는 음향기기는 전시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다.
- KC마크가 없는 공산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참가 신청 시 신고한 브랜드/전시품목 이외의 전시품목 적발 시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즉시 해당제품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향후 행사 참가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참가 계약금을 참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2년 8월 12일(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 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지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잉여 시 반환된다.

- 2022년 6월 30일까지 취소 : 참가비의 30% 위약금 납부
- 2022년 7월 1일 ~ 2022년 8월 12일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 위약금 납부
- 2022년 8월 13일 이후 취소 : 참가비 100% 위약금 납부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에서 지정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EXCO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쟁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